위탁연구 변경 계약서

연구 실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(이하 “실시기관”이라 칭함)과 연구 지원기관인 000000000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칭함)와 체결한 연구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.

연구 과제명:

연구 책임자:

1. 변경사항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변경 사유 |
| 제 4조.  연구비 지급조건 |  | 본 계약에 따른 총 연구비는 10,000,000 원정 (간접비 12% 및 병원 관리비 5% 포함)으로 하며, (갑)은 (을)에게 본 계약 체결 이후 2차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다.  1차 지급: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5,000,000 원정 현금으로 지급  2차 지급: 중간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5,000,000 원정 현금으로 지급 |  |

2.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기 체결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 변경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기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본 변경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실시기관”과 “지원기관”이 서명 혹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월 일

“지원기관” “실시기관”

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

서울대학교병원

병원장: 서 창 석 (인)

연구책임자: (인)